

녹색성장과 제주의 1차산업

제주대학교 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 · 고 성 보

I. 녹색성장의 추진배경과 주요내용

1. 추진배경

가. 대외적 여건

○ 대외적 여건

- 선진국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 최소화에 국력집중
- '요소투입' 위주의 기존 경제성장은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 한계도달
- 녹색기술 육성 및 환경규제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추진

○ 주요국 사례

- EU : 신재생에너지법(03년)을 기반으로 녹색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가속화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비중을 2010년 12.5%, '20년 20%까지 확대)
- 일본 : 이노베이션25('07.5월)를 통해 환경을 경제성장과 국가공헌의 엔진으로 활용하는 전략체택 (Cool Earth Partnership운영)
- 미국 : 오바마대통령은 향후 10년간 1,500억달러를 투자, 신재생에너지 집중육성, 500만개 일자리 창출공약
- 덴마크 : 신재생에너지분야 집중육성으로

에너지 자립국가 및 세계 1위 풍력대국으로 부상 (에너지 자급도 : 5%('80년)→145%(2006년))

나. 대내적 여건

○ 높은 에너지 대외 의존도

-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 : 총 에너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
- '07년도 에너지수입액은 950억 불로 전체 수입액의 26.6% 차지
- 에너지소비량의 높은 증가 추세 및 선진국 대비 높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 연평균 에너지 소비 증가율 1.1%, 전체 에너지원 83%가 화석연료 ('07년)

-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9위(5.9억톤, '05년), 누적배출량 세계 22위, 증가율 2.8%

○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녹색 경쟁력지수 (SERI)

○ 녹색경쟁'의 시대적 흐름에 앞서나가지 않고서는 일류 선국국가로 진입 불가능

-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 (대통령, 2008. 8. 15 경축사)

2. 녹색성장의 개념과 주요 내용

○ 녹색성장의 개념

- (경제⇒환경) : 환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는 경제성장

: 경제 성장과 환경 훼손의 탈동조화 (Decoupling) 추구

: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에코효율성 추구

- (환경⇒경제) : 환경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 경제성장

: 경제활동의 환경친화성을 증가시키는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의 성장동력화

○ 녹색성장의 3대 요소와 주요 내용

3대 요소	내 용
① 자원(에너지) 사용량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 개편 에너지소비절약/사용효율화 생태효율성제고정책
② 탄소배출 등 환경부하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재생 및 청정에너지개발·보급 확대 CO2 배출규제 저탄소·친환경인프라구축 소비자녹색제품구매활성화
③ 신성장 동력으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기술R&D 투자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육성 세계시장선점지원

○ 교토메커니즘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3가지의 국제협력수단을 허용

- JI (Joint Implementation),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ET (Emission Trading)임.

- 공동이행제도와 배출권거래제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선진국만 참여

- 청정개발체제는 200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개도국이 참여

○ 배출권 거래시스템

- 배출권 거래소 : 사전에 할당된 배출허용량을 기준으로 해, 허용량보다 배출을 적게하는 기업과 허용량에 비해 배출을 많이하는 기업간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스템.

- 거래되는 배출권은 사전에 할당된 배출권리가 될 수도 있고,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프로젝트 등을 실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배출 허용량(CDM credit)이 될 수 있음.

- 유럽에서는 배출권 및 배출권 관련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을 개설해 이를 기업 및 금융기관이 거래하는 금융상품 개념으로 도입하고 있음.

- 미국도 CCX(Chicago Climate Exchange)나 NYMEX(New York Merchant Exchange)에서 파생상품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배출권 감축의무가입국에 포함될 경우를 대비해 배출권거래소를 도입하고 할당된 배출권이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구 분	내 용
공동이행제도 (JI)	선진국인 A국이 선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Emission Reduction Unit, ERU)의 일정분을 A국의 배출저감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청정개발체제 (CDM)	선진국인 A국(정부, 민간조직)이 개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ERs,)을 자국의 감축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교토의정서 제12조) -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선진국들로 하여금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
배출권 거래제도 (ET)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국가간 배출 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교토의정서 제17조) *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산림부문은 15%(4,257천 CO ₂ , '06년대 21% 증)차지 (8\$/톤에 거래) - 자발적 탄소시장 : 재생에너지 31%, 에너지효율 18%, 메탄 16%, 산림 15%, 농업 3% 등

자료 : 유엔(1998). 선진국은 「부속서 I 국가」를 의미하고, 개도국은 「비부속서 I 국가」를 의미함

II. 농업부문의 저탄소 녹색성장 발전전략

1. 농업부문의 녹색성장 개념

- 농업생태계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보장되는 성장
 - 기존 농업성장 : 고투입 & 고산출 중심
 - 농업 녹색성장 : 지역, 수계별 환경용량을 고려한 재배기술/농법 전환, 환경친화적/저탄소를 지향하는 농업정책 추진
- 친환경농업, 저탄소농업 확대 등 지속가능한 농업체계의로의 전환과 환경친화적 농업/농촌 기반정비 등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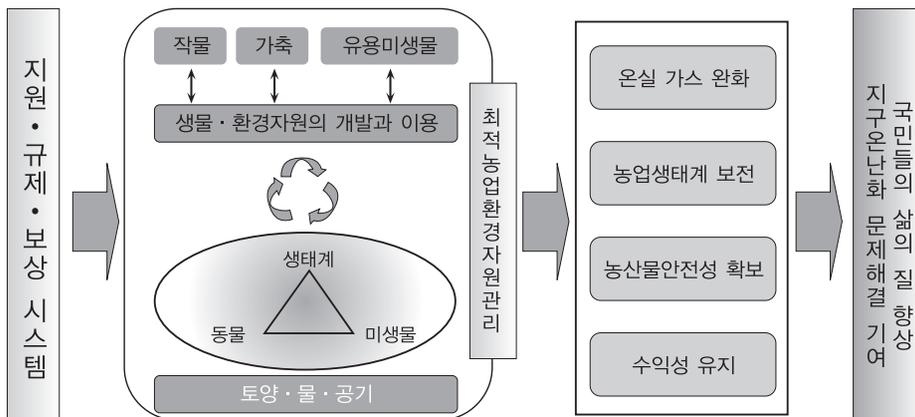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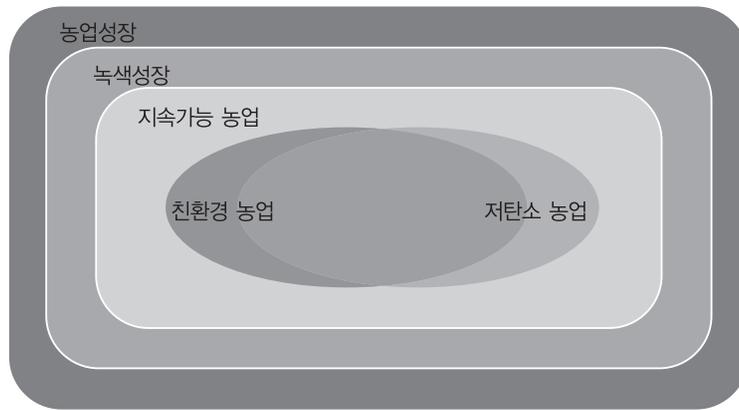
2. 비전과 목표

- 비전 : 농업과 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완화하고 농업생태계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 추진목표 : 적절한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완화(감축과 흡수), 농업생태계 보전, 농산물안전성확보, 농가의 수익성 유지

3. 추진방법

- 온실가스 의무 감축과 관련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농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실천전략은 2030년을 목표 연도로 시스템구축을 위한 기반구축단계, 활용단계, 정착단계 등 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 추진
- 기반구축단계(2008~2012)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관련 친환경농업육성 정책 추진, 신재생에너지 생산기반 구축, 교토메커니즘 활용 시범사업 등을 추진함. 온실가스 흡수 부문에서는 토양유기탄소 역할 규명, 농경지의 유기탄소 저장량을 추정하고, 적응단계에서는 농산물 생산성 및 생물상 예측 개발, 온난화 적응품종 개발 등을 추진함.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부문 녹색성장 심포지엄 자료집, 2008.12. p.42

- 활용단계(2013~2018)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D/B 개발, 온실가스 저감 기술의 보급 확대, 교토메커니즘 활용 확대, 흡수 기능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 적용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정착단계(2019~2030)는 환경친화적 저탄소 농업생산시스템 구축과 관련 온실가스 저감, 온실가스 흡수, 온난화적응 등 각 분야 프로그램의 최적의 정책결합 추진

	기반구축단계 (2008~2012)	활용단계 (2013~2018)	정착단계 (2019~2030)
온실 가스 감축	- 친환경농업육성 확대 -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보급확대 - 보조금 및 지원사업확대 - 배출권거래제 및 CDM 시범사업 추진	- 온실가스 배출 D/B 구축 - 지역별 맞춤형 기술 개발 및 보급 - 배출권거래제 정착	- 온실가스감축정책 프로그램보완 - 저탄소 농업시스템 구축 - 온실가스 감축 BMP정착
온실 가스 흡수	- 토양유기탄소 역할 규명 - 유기탄소 축적량 추정 및 활용기반 구축	- 농경지 흡수기능 제고 인센티브 프로그램 활용 - 흡수원 활용 제고 교육	- 온실가스 흡수기능 활용 - 흡수기능 극대화 농업 시스템구축
온난화 적응	- 생산성 예측 및 생물상평가 모델 구축 - 농업생태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온난화 대응 재배적지 및 작물분포도 작성 - 온난화 적응 종자개발	- 온난화 적응 매뉴얼 작성 및 보급 - 기상정보활용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 온난화 적응품종 보급 - 온난화 적응 정보제공 및 교육시스템 구축	- 온난화 적응 시스템 구축 - 온난화 활용 농업생산 시스템으로 전환 - 작물형질전환 평가 시스템구축

Ⅲ. 제주지역의 1차산업의 현황과 저탄소 녹색성장 발전전략

1. 제주지역의 1차산업현황 및 문제점

○ 제주 산업구조

- GRDP : 7조 5,660억원 (전국 0.9%)
 - 산업구조 : 1차(13.9%, 전국 4.5배), 3차(80%)
 - 고용구조 : 1차(21.8%), 3차(75.4%), 2차(2.8%)
 - 전년대비 성장 : 1.8% 성장 (전국 5.1%)
 - 지난 11년 평균 GRDP 성장율 : 전국 1/2 (전국 4.8%)
- ⇒ 1·3차 산업양극화와 성장동력의 약화로 인한 장기 침체 가능성 고조로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신성장동력 모색 필요

○ 제주 농축산업 현황

- 농가수 : 35,735호(제주도 총 가구의 16.9%)
- 축산농가 : 5,464호(호당 돼지사육 :

1,100두)

- 돼지사육두수 : 43만7천(전국 9,606천두 4.5%)
 - 축산분뇨 발생량 : 1일 4.5천톤, 연간 164만톤
 - 농축산물 조수입 : 1조5,704억원(관광:2조 2천억)
 - 감귤 조수입 총액 : 4천4백억원
 - 연간 감귤박 6만톤 내외 배출
- ⇒ 1차산업 비중이 전국 4.5배로 매우 중요하며, 축산분뇨 및 감귤박 처리가 시급함

○ 세계 환경친화적 농축산물현황

- 전세계 유기농산물 재배면적 : 3천만ha (전 경지의 0.7%)
- 한국 유기농산물 재배면적 : 8.5천ha(전 경지의 0.48%, 전세계대비 0.02%)
- 중국의 유기농산물 재배면적 : 230만ha (전세계대비 7.5%)
- 우리나라의 270배 우리나라 전체경지면적 180만ha의 1.3배
- 세계 유기농 시장규모 : 연평균 15% 성장,

230억달러(02년) → 400억달러(06년)
 ⇒ 시장 개방에 대비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 대응전략 필요

○ 제주 환경친화적 농축산물 현황
 261호(01년)에서 1,129호(2008년기준)
 인증건수 : 751건, 출하량:26,423톤
 (전국의 0.7% 인증 농가와 1.2%의 인증 출

하량 보임)
 무농약과 저농약 인증 74.5%(출하량기준)
 유기축산 : 5건(전국 47건), 무항생제 인증 44건(전국 1,125건) → 전국대비 3.9%
 농축산물 안전성 신뢰도 : 보통 혹은 부정적
 ⇒ 환경친화적 농축산물 제주도 내 성장추세는 뚜렷하나 전국대비는 미미한 실정이며, 소비자 안전신뢰도 제고 필요

2. 제주지역의 가축분뇨 및 감귤박 처리현황

○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축수 및 가축분뇨 발생량 추정(2008년 기준)

축종	농가수	사육두수	두당1일 배출량(톤)	발생량(톤)		
				일발생량	연발생량	
계	1,555	1,631,575		4,495	1,640,675	
소	한육우	1,021	25,697	14.6	375	136,875
	젖소	66	4,907	45.6	224	81,760
돼지	347	436,771	8.6	3,756	1,370,940	
닭	121	1,164,200	0.12	140	51,100	

- 두당 1일 배출량은 환경부고시 제1999-109호
 자료 : 제주발전연구원, 축산분뇨 재활용 시설의 편익추정에 관한 연구, 2008, p.13

○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축분뇨처리실태

구분	가축분뇨 발생량	가축분뇨처리실태						세척수 및 기타
		계	자원화 이용		공공처리	공해상배출		
			퇴비이용	액비이용				
2007년	천톤/년	1,599	1,023	395	511	50	67	576
	톤/일	4,380	2,802	1,082	1,400	137	183	1,578
	비율	100%	64%	25%	32%	3%	4%	36%
2008년	천톤/년	1,640	1,112	433	551	78	50	528
	톤/일	4,493	3,046	1,186	1,508	213	139	1,447
	비율	100%	68%	26%	34%	5%	3%	32%

- 2007년도 대비 자원화율 3% 증대 목표(906천톤 → 984천톤)
 자료 : 제주발전연구원, 축산분뇨 재활용 시설의 편익추정에 관한 연구, 2008, p.17

○ 연도별 감귤박 발생량 추정 및 처리비용

연도	가공용 수매 (톤)	감귤박 발생량 (톤)	해양 배출 단가 (원/톤)	사료용 처리단가 (원/톤)
2002년산	112,359	55,050	33,000	-
2003년산	120,333	61,360	21,000	-
2004년산	100,517	51,260	21,600	-
2005년산	125,343	63,170	24,600	-
2006년산	109,483	53,210	44,000	16,500
2007년산	138,782	69,351	63,000	33,000

3. 현실적 상황(당면과제)

- 축산분뇨+감귤박 해결방안 마련 시급
 - 런던협약에 따라 2012년부터 축산분뇨 및 감귤박 해양투기 전면금지 +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 + 관광도로의 축산분뇨 악취로 환경 친화적 축산분뇨 및 감귤박 포함한 감귤폐기물 처리 방안 모색 절실
- 먹거리 안전사고와 신뢰 부족
 - 먹거리 관련 위생, 안전사고 빈발(녹차 농약성분, 유기농 야채 및 새우깡에서 생쥐 머리로 추정되는 이물질 검출)로 소비자의 식품안전성 신뢰도 저하
- “친환경 농업 시범도” 선포(2008, 4)
 - 제주특별자치도는 기간산업인 1차산업의 발전과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해 전국 최초 “친환경농업 시범도” 선포에 즈음하여 환경친화적 농축산업을 건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전략 필요

4. 선진국(네덜란드)의 저탄소녹색성장의 구상 : Agripa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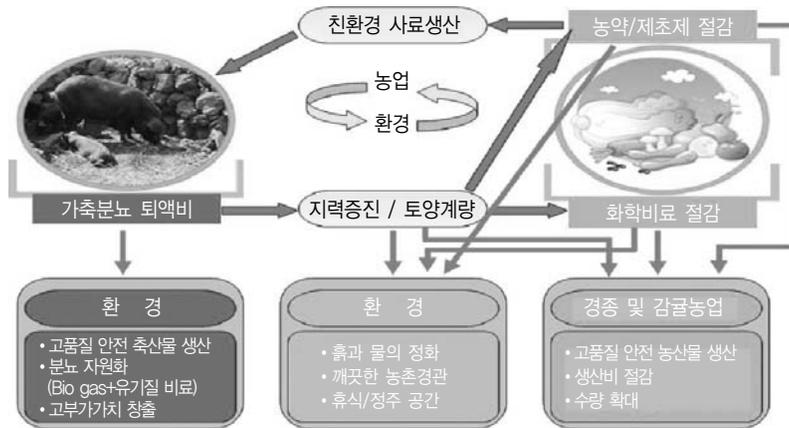
- 농장의 새로운 모형, 아그로파크는

3P(People, Planet, Profit)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미래형 농장

-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해결책으로 시작
- 가축시설과 화초·채소 재배시설, 가공시설이 상존하는 농장
- 대규모 돼지 사육시설인 Delta Park의 경우 총 30여만 마리의 돼지 수용 가능
 - 돼지의 배설물을 발효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버섯을 재배
 - 버섯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온실화초 재배에 이용됨
 - 가공공장의 부산물을 이용하여 돼지 사료를 만듦 (경축순환농법)

5. 자연순환농업 체계

- 자연순환농업은 자연생태계의 연속적인 물질순환 기능을 활용하여 작물과 가축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농축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농업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수익이 보장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성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자연순환농업은 특정 자재의 사용 또는 특정농법에 한정되지 않고 자연계 물질순환의 균형을 추구하는 모든 농업을 포함하



는데 구체적으로는 가축분뇨 퇴·액비 등 유기질 자원을 토양에 환원시켜 토양을 건전하게 유지 보전하면서 농업생산성을 확보코자 하는 농업을 일컫는다.

6. 감귤기능성물질의 산업화

가. 감귤기능성물질의 산업화의 필요성과 감귤산업의 재편방향

- 감귤산업은 생과중심과 품질이 다소 떨어지는 감귤을 시장격리 차원에서 단순착즙하여 감귤생과시장 가격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음.
- 2007년산 노지감귤 처리난에서 보듯이 조그만 생산량이 많아지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 가격은 폭락세임(10kg박스당 5,000원 - 유통비 2,500원=농가수취가격 2,500원, 경영비도 커버못함).
- 런던협약에 의해 2012년도부터는 감귤가공공장의 감귤박 해양투기가 어려워 짐에 따라 비용이 어찌하든 이를 자체 처리해야 될 상황에 직면해 있음.
- 감귤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하에서 감귤산

업의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현재의 문제가 풀릴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어 감귤산업을 재편할 필요성 있음

나. 감귤박 + 미숙과의 기능성물질 산업화의 계량적 효과 추정

- 감귤기능성 물질 산업화의 직·간접의 전체효과는 적과규모가 5천톤인 경우에는 119.62억원, 1만톤인 경우 247.84억원, 1만5천톤인 경우 372.84억원, 2만톤인 경우, 500.31억원이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막대한 경제적 효과는 본 사업에 투자되는 전체비용 약 100억원, 10년 사업기간을 가정하면 연간 10억원의 설비투자비로 그의 50배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감귤기능성물질의 산업화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7. 녹색 농촌 휴양 정주공간 조성 및 관광산업화

가. 농촌개발

- 농촌개발행위는 소규모 지방 기간구조들

감귤적과 처리규모	직접효과 (사업수입+적과감귤 판매수입)		간접효과 (생산량조절+품질향상)			소 계		총효과 (백만원)
	사업수입	적과판매 수입	성숙과 기준 생산조정량 (톤)	생산량 조절효과	품질향상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5000톤	1,298	1,000	10,000	6,771	2,894	2,298	9,664	11,962
10000톤	3,455	2,000	20,000	13,541	5,788	5,455	19,329	24,784
15000톤	5,291	3,000	30,000	20,312	8,681	8,291	28,993	37,284
20000톤	7,374	4,000	40,000	27,082	11,575	11,374	38,658	50,031

을 연결하여 농촌 공동체들을 연결하고 지역 단위의 대규모 투자와 통합 정책을 실시하는 것 - 이러한 전략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통신, 수송, 에너지, 수자원 등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이러한 여건하에서 농촌개발 전략의 승수효과를 기대

- 유럽농촌지역의 개발정책의 주요목표는 농업의 경쟁적 위치향상, 환경과 농촌경관의 가치 제고,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과 경제활동 다각화임.
- 도시민의 56% 농촌지역 거주 희망
- 농촌에 신재생에너지 주택 보급

나. 농촌관광의 활성화 = (Green tourism= 서비스 농업 service agriculture)의 산업화

- 생태관광 활성화
- 농촌관광시장의 발전단계
 - 초기형성단계(우리나라) : 농외소득증대, 지역활성화
 - 양적성장단계(일본) : 지역활성화(참여농가비율 0.2%, 숙박점유율 3%)
 - 질적발전단계(유럽) : 일반관광과의 경쟁, 농촌관광의 브랜드화 및 네트워크화(참여농가비율 3%, 숙박점유율 30%(프랑스 기준))

○ 농촌지도기관의 역할 확대 : 기존의 재화 생산영역 + 서비스생산영역 추가

IV. 결론

- 정부의 광역경제권[5+2]의 제주특별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으로 지정된 물 및 관광, 레저산업은 기본적으로 청정한 물과 깨끗한 자연, 청정환경이 유지되지 않으면 안되는 산업임.
- 물산업 육성 : 제주지하수의 프리미엄 브랜드화(피지워터 수준) + 제주워터클러스터 조성 + 지역맥주 개발 + 스파, 테라피(수치료) 허브 육성
- 관광, 레저 산업 : 동북아 최고의 리조트형 MICE 거점도시 육성
 - * MICE : 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회의,포상여행,컨벤션,전시관련산업)
-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은 1차산업의 생존 전략이고 휴양형, 체류형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튼튼한 인프라 구축의 전략임.
-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1차산업과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Win · Win 전략임.

제주특별자치도법 4단계 제도개선의 전망과 과제

제민일보 정치부장·박 훈 석

△1·2·3단계 제도개선의 평가와 반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9년 7월1일로 출범 3주년을 맞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북아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목표로 출범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행정규제의 대폭적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 경쟁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제주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제주가 변방의 고립된 섬이 아니라 제주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관광·교육·의료 등 '4+1' 핵심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책임성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의 세차례 제도개선을 통해 1705건의 중앙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되면서 자치권의 범위가 확대됐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제정된 1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1062건, 2007년 8월 2단계 제도개선에서는 278건, 2009년 3월 3단계 제도개선에서는 365건의 중앙정부 권한이 이양됐다.

이처럼 1·2·3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많은 중앙권한이 이양됐지만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

장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취지에는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공직사회와 관련된 조직·인사 등 자치행정분야는 많은 성과를 나타냈지만 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핵심산업 육성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경제자치권 이양은 제도개선 협의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반대로 무산됨으로써 제주도민들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해 느끼는 체감 만족도가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국무총리실이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결과에서도 주민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주민만족도가 2007년에 비해 2008년 향상됐지만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5점 이하에 머물고 있다. 국무총리실과 제주특별자치도가 협약을 맺고 실시한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 평가에서는 100점 만점에 21~47점, 2008년에는 50~65점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정과 세제 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함께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22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시키는 등 제주도의 노력에 따라 주민만족도가 점차 향상되고 있지만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실현에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도 1·2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중

양정부의 반대로 제주 전지역 면세화, 법인세 인하 등 경제자치분야의 핵심권한 이양이 좌절됨으로써 제주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특별한 지원도, 특별함도 없는 특별자치도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낳는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인 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특별시, 광역시, 도(道)의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 특별함을 가지지 못하는 한계에서 비롯되고 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외교·국방 등 국가의 존립사무를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면서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특별한 지위를 보장하겠다고 정부와 제주도가 홍보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정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 새로운 광역지방단체의 한 종류로 명시됨으로써 '특별함'을 갖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에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채 지방자치법상의 광역자치단체로 규정됨으로써 결국은 중앙정부의 국가사무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이양하거나 조례 위임형태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제·개정됨으로써 포괄적인 자치입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3단계 제도개선도 관광진흥법·관광진흥개발기금법·국제회의산업육성법 등 '관광3법 일괄이양' (내국인 카지노 설치권한 불허)을 제외하면 1·2단계 제도개선의 전철을 밟고 있다.

국가의 개별사무를 이양하는 제도개선 방식에 따라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해도 중앙부처의 지도·규제를 받는 등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방식이 과거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형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특별자치도의 조기 완성을 위해서는 제도개선 방식의 획기적인 전환이 과제로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3단계 제도개선에서 채택된 '관광3법' 일괄이양 방식은 2009년 5월부터 추진, 2010

년부터 시행 예정인 4단계 제도개선의 시금석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광3법 일괄이양 방식은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정부의 개별사무 이양방식에서 벗어나 포괄적인 기능이양 방식으로 바뀌는 전환점을 마련함으로써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비록, '관광3법' 일괄이양이 내국인 카지노 설립권한 불허 및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부재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개선사항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제도개선 방식에는 큰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관광진흥법상 송객수수료 규제조항이 없어 관광고비용 구조를 해소하는데 한계점을 안고 있고, 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일괄이양됐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면세점 등으로 부과대상을 확대하지 못해 관광진흥기금 신규수요의 증가에 따른 세입재원 확충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4단계 제도개선 특별자치도 조기 완성 촉진

기존 개별사무권한이양방식에서 법률단위 일괄이양방식을 채택한 4단계 제도개선의 추진 방향은 3월28일 제주에서 처음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시작됐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는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 등을 심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조기 완성을 위해 중앙부처 권한 이양방식을 현행 개별 단위사무 중심에서 '법률단위 일괄이양'으로 전환해 오는 2011년까지 제주관련 필수 법률 모두를 이양기로 결정했다.

또, 관광·교육·의료 등 핵심산업 육성과

관련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홍콩·싱가포르 등의 국제자유도시 수준에 상응하는 '규제자유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올해 추진할 4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1~3단계의 개별사무를 통해 중앙권한이 부분적으로 이양된 167개의 핵심산업 관련 법률을 일괄이양 방식으로 전환하고, 오는 2011년의 5단계에서는 제주와 관련된 70여개의 모든 법률을 일괄 이양키로 했다.

'제주도 규제자유화 시스템' 구축에 따른 '규제 일몰제'도 전면 도입, 전국 공통으로 적용할 필수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를 제주도에서는 모두 폐지하는 등 국제자유도시 발전을 촉진키로 했다.

특히, 법률이양방식의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 사무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사무로 변경되더라도 국비지원이 계속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키로 하는 등 재정자주권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또 "일괄방식은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이며, 제주도가 규제 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가 규제개혁 학습능력을 키워야 하며, 도민들의 인식을 일대전환해 넓고 긴 안목을 갖고 세계 최고의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6월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제주도지원위원회에 제출, 관련 중앙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중앙부처가 다른 의견을 제출한 쟁점법률에 대해서는 9월까지 협의·조정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무총리실과 협의를 거쳐 제출한 4단계 제도개선(안)은 특별자치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4단계 제도개선안은 크게 법률단위 일괄이양 방식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을 확대하는 제도개선, 특별자치도 체감도 및 제도개선 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한 5대 핵심과제의 2개 기본방향으로 짜여졌다.

외교·사법 등 국가존립과 건강보험 등 최소한의 국민통합기능 등을 제외한 권한이양 확대를 위해서는 일괄이양 대상 법률 94건, 개별이양 법률 47건 등 모두 141개가 선정됐다.

주요 법률단위 일괄이양 법률 또는 개별이양 법률에는 도시개발과 관련한 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지하수법 등이, 보건·의료 분야는 약사법·의료법·식품위생법 등이 각각 포함됐다. 교육분야는 사립학교법·지방교육자치법·유아교육법 등이, 농수산은 농지법·농어촌정비법 등이, 환경분야는 환경영향평가법·수질보전법·하수도법 등이 각각 선정됐다.

이와함께, 4단계 일괄이양 추진과 병행할 개별반영 과제로는 3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주요 과제 및 신규발굴 과제 60여건이 분류, 검토 중이다.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분야별 개별반영 검토대상 과제로는 관광의 경우 면세물품 구입한도 상향과 국제회의시설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이, 교육 분야는 영어교육도시내 대학(원) 영리법인 허용, 국제학교의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 과정 입학허용 등이 포함됐다.

투자유치분야에서는 개발사업 승인시 투자진흥지구 지정의제, 각종 조례 감면기간 확대 및 시기 조정, 외국인 출입절차 간소화 등을 검토중이고, 자치분권 분야는 자치경찰 직무 확대, 감사위 제도개선, 미이관 특별행정기관 사무 이관 및 각종 사전협의 사항 폐지 등이, 재정·세계 분야는 국유(일반)재산 일괄 양여, 지방세 포괄 특례 등이 검토대상 과제로 분류됐다.

△도민 성과 체감 5대 핵심과제도 추진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5대 핵심과제도 4단계 제도개선(안)에 반영, 추진된다.

도민이 공감하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5대 핵심과제로는 국세 자율권 부여,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 자치재정권 강화, 녹색성장산업 육성이 포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세자율권 확보를 통해 법인세율 인하, 도전역 면세화 등을 실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소득세, 법인세 등 모든 국세(12종)에 대한 자율권을 확보함으로써 과감하고 자율적인 세제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세자율권이 확보되면 2007년 기준으로 제주지역 국세징수액 4,400억원이 정부 세입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입으로 귀속된다.

국세의 자율권 확보와 관련해 (가칭) '제주도 특별세' 도 도입, 세율조정권 및 징수액을 이양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특별세에 대한 세율조정권을 활용, 부과하면 제주세무서가 징수한 후 이를 제주특별자치도 일반재원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제주특별세가 도입될 경우 현재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국세) 지원규모는 축소된다.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제주지역의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도 5대 핵심과제에 포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출입횟수 및 배팅금액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민여론조사에서 무산됐던 투자개

방형 병원을 허용, 제주특별자치도를 동북아 의료관광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과제도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개방형 병원을 허용, 국내·외 우수 의료기관 유치 및 의료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도민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및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법제화하는 보완책도 제시하고 있다.

중앙행정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자치재정권 강화도 핵심과제에 포함됐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제주계정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전체 회계 규모 확대비율과 권한이양에 따른 비용을 포함하는 규모로 확대 개선한다는게 제주특별자치도의 계획이다.

제주계정 규모를 확대할 자치재정권 강화에는 보통교부세 산정금액이 현행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규정된 3% 법정율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금액을 추가로 교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및 지역여건을 고려해 국고보조사업 보조율을 10~20% 인상함으로써 정부 재정지원 확대, 재정운영 안정성 및 자율성 향상 방안이 담겨 있다.

마지막으로 녹색성장 산업 육성은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그린카 등 시범 추진 방안이 주요 골자다. 청정환경의 섬이라는 특수성과 1·3차산업에 특화된 경제구조를 활용, 저탄소 녹색성장의 모범도시로 조성하는 한편 바이오디젤 에너지 및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를 통해 '제주형' 녹색성장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4단계 제도개선 실현 '기대 반, 우려 반'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말까지 도의회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4단계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 국회 입법 일정을 감안해 9월까지 관계 부처와 협의·조정 및 지원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10월말이나 11월초까지는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을 획기적인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약속함에 따라 기존 제도개선과 달리 '특별자치도'에 이름에 걸맞는 성과가 제시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된 특별자치도 1~3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1,700건에 이르는 중앙권한이 이양, 양적 성과를 거뒀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계속 요구한 핵심규제 개선 과제는 전국적 통일성·형평성 등의 이유로 배제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로 인해 제주가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인 정책적용이 어려운 사안에 대한 정책실험장으로만 활용, '특별자치도'가 아닌 '실험자치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금까지 제도개선 과정에서 되풀이됐던 중앙부처의 전국 형평성의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치밀한 논리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과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등은 제주 지역을 비롯한 전국적인 반대여론 등으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가 최근 4단계 제도개선과 관련 권한이양에 따른 제주도의 수용능력이 부족하다고 잇따라 지적하고 있고, 제도개선 과제도 당장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안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함에 따라 제주도가 요구하는 핵심과제가 이번 제도개선 과제에서 또다시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전국적인 통일성·형평성의 인식에서 벗어나 4단계 제도개선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4단계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약속 이행을 이끌어 내는 것을 비롯해 전국 형평성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이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원과 노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양된 권한을 활용해 성과를 실현하는 제주사회 스스로의 책임성과 자치역량이 발휘돼야 한다.

중앙권한을 활용해 성과를 만들면 중앙정부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신뢰, 오히려 자신들의 권한을 더 이양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핵심과제에 대한 주민공감대 형성을 통해 도민 역량을 우선 결집시켜야 한다.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핵심사안에 대한 찬·반 갈등이 심화되면 1~3단계 제도개선 처럼 중앙부처는 물론 국회의 문턱도 넘지 못하게 된다.

지구력승마경기

- What is Endurance Competition -

JIBS 보도2팀장 · 송 종 훈

1. 지구력승마의 정의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지구력 경기는 160km의 지구력 코스를 달리는 동안 대 회로(路), 거리, 기후, 지형 및 시간에 대해 출전 마필의 스테미너 및 건강 상태를 안전하게 관리하 는 선수의 능력을 테스트 하는 경기이다. 출전마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는 이 경기는 일정거리마 다 수의검진을 통과해야 하고, 의무휴식시간을 가지며, 완주 시 출전마의 심박수가 일정 기준(20 분 이내 64bpm)을 넘지 않아야 완주 기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지구력경기는 마필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기로써 누가 빨리 달리느냐 보다 누가 마필 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면서 전 코스를 무사히 완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경기라 할 수 있다.

지구력승마는 나이 성별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승마스포츠이며 15km 의 간단한 레저 승마부터 하루에 160km까지 달리는 지구력승마, 그리고 여러 날에 걸쳐 나누어 진행하기도 한다.

2. 지구력승마의 역사적 배경

Pony Express (우편배송 파발마)

캘리포니아의 주요 도시 세인트 조셉, 미주리, 새크라멘토 사이의 원활한 우편배송을 위해 조직 된 것이 Pony Express이다. 1860년 4월3일에서 1861년 10월까지 18개월 동안 183명의 배달 부가 참여하여, 말을 사용한 릴레이형식으로 우편물을 배달하였다.

초기 지구력 승마대회

Tevis Cup (미국) - 서부지구 트레일 승마 혹 은 테비스 컵으로 불리는 이 대회는 160km 대회가 시초. 아마추어대회는 1955년부터 실시. 2007년 53회



테비스 컵 대회에 8,751명의 참가자가 출전했으며 4,763명이 완주하는 기록을 냈다. (54%)

The Quilty (호주) - 호주 NSW주에서 1966년에 26명이 참가하였고 엄격한 수의사의 감독아래 진행되었다. 호주 최고의 지구력승마대회로 알려진 이 대회는 건강한 마필이라면, 문제없이 하루 안에 160km를 질주할 수 있음을 모토로 삼고 있다. 300여명이 참가한 2000년 대회는 당시 세계 최대 지구력대회라는 명성을 얻었다.

3. 지구력 승마대회 종류

- Novice Competition (국내대회)
- CEI 1Star - 일일 80-119km 경기
- CEI 2Star - 일일 120-139km 또는 이틀 이상 계속되는 70-89km 경기
- CEI 3Star - 일일 140-160km, 이틀 계속되는 90-100km, 삼일이상 70-80km 경기
- CEI 4Star/World Championship - 일일 최소 160km의 시니어 챔피언십

4. 지구력 경기 진행방식

- 지구력대회는 몇 개의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며, 하루 또는 며칠에 걸쳐 진행한다.
- 각 단계는 20km-40km 이내여야 한다.
- 각 단계를 마친 후 반드시 경기를 중단하고 수의사 검진을 받아야 한다.
 - 160km에서 수의검진은 최소 5개소와 전 코스 완주 후 최종검진에 걸쳐 총 6단계이며, 기술위원(TD)의 권고가 있을 경우 5단계로 줄일 수 있다.
 - 각 단계별로 실시한 수의검진기록이 일정수준(20분 이내 맥박 64bpm)을 초과하거나 극심한 피로, 파행, 탈수현상 등을 보이는 출전마는 실격 처리된다.
- 수의검진을 마친 후 의무휴식시간을 갖는다.
- 실격처리 없이 완주 한 후 최종 수의검진을 통과한 출전마만 그 기록이 인정된다.

5. 지구력 경기 필수요원

- **마장심판원 (GJ-Ground Jury)**
 - 지구력경기의 판정, 수의학적 관리, 시간 기록에 관한 일체의 내용 및 경기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 **기술위원 (TD-Technical Delegate)**
 - 출전마의 검진 및 검사, 출전마 및 선수의 숙식, 경기진행 지원 등 경기진행상의 기술 및 행정적인 조치를 승인하고 기술요원들의 복무를 감독하며, 업무상의 결정 내용을 마장심판원에게 통지한다.
- **수의 위원회 (VC-Veterinary Commission)**
 - 말의 안전, 건강, 보호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전적인 결정권을 갖는다. (모든 FEI 승인

지구력경기대회에 FEI 수의 규정을 적용)

• **수석 스투어드 (CS-Chief Steward)**

- 경기 전반에 걸쳐 경기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관장하며, 경기 참가자들의 전반적인 안전 및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수석 스투어드는 마장심판원, 기술위원 및 수의위원회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해야 하며 경기계획과 관련하여 조직위원회 및 기술위원과 협의해야 한다.

6. 수의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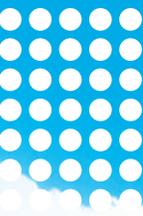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마필은 출발전, 매 30km~40km 구간별 도착지에서 전문 수의사팀의 수의 검진을 통과해야 한다. 참가말이 과다한 피로증세, 탈수 증상, 파행 증상을 보이거나 맥박 허용치 (64bpm)를 초과하면 시합 중지 규제를 받을 수 있다.

□ **수의검진 진행방식**

1. 수의검진구역 도착
2. 맥박측정 (분당 64bpm이하 통과)
3. 마체검사선 속보로 걷기 (파행여부 확인)
3. 신진대사 매개변수 확인 (점막, 탈수증세, 모세혈관, 장기음)
4. 피부 상해여부 확인
5. 실격마 재 수의 검사 (2회까지 가능)
6. 경기 지속 적합성 판정
7. 의무정지시간 (대회별로 상이 20분~50분)
8. 다음구간 경기 재개

7. 참가 자격 및 마필 조건

1.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국 승마협회의 승인을 받아 개인 또는 팀으로 출전할 수 있다.
 - NOVICE 출전 마필 나이는 최소 5살
 - CEIs 1Star ~ 2Star 참가 마필 최소 나이는 6살
 - 3Star 참가 마필 최소 나이는 7살
 - 4Star, CEIOs 와 Championships대회 참가 마필 최소 나이는 8살
 - 임신 120일 이상 또는 망아지를 키우고 있는 암말은 참가 불가능.
 - 모든 마필의 출생나이는 대회참가 신청 시 수의사의 서명을 거쳐 확인되어야 하며 이는 'FEI 마필여권' 에 기록해야 한다.
 - 북반구 마필 생일은 1월 1일, 남반구 마필 생일은 8월1일.
2. 구력 마필 신체조건
 - 장거리에 적합한 작은 체구 (145-150cm)
 - 근육질 타입



8. 대회 코스

- 중동의 사막, 동남아의 정글과 열대기후, 남미의 덥고 건조한 고산이도 코스, 북미의 바위 코스 등 거의 모든 자연지형을 활용하여 코스구성이 가능하다.
- 모든 지형에 관한 설명 및 고도변화 등은 대회일정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 원칙적으로 차량을 위한 도로 (포장도로)는 전체코스 비율에 10%를 초과 하지 않아야 한다.
- 일반적으로 어려운 코스는 대회초반에 먼저 진행한다.
- 대회거리와 구간구분은 대회운영진이 결정하며 대회 일정표에 분명하게 표시한다.
- 도전적인 코스는 자연적 장애물인 참호, 가파른 언덕, 개울 등만 허용되며 인공적으로 제작된 장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 코스는 최대한 자연상태 그대로를 활용해야 한다.
- 도착지점은 다수의 말이 서로의 진로에 방해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넓어야 하며 최대한 수의 검진구역에 가까이 위치해야 한다.



9. FEI (Federation Equestrian International)란?

국제적인 승마 공식 관리 기관으로 1921년 11월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현재 FEI에는 168개 회원국이 있으며, 회원국 협회장 및 선수들 중에는 각 국 왕족도 상당 수 있다.

□ FEI 8개 승마종목

종 목	내 용
Endurance (지구력승마)	승마의 마라톤 경기라 할 수 있는 경기로서 화려한 기술 보다 얼마나 마필의 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장거리를 달리느냐를 겨루는 종목. 경기 거리는 40, 60, 80, 120, 160km로 세분화되며, 구간별로 나누어 경기를 진행.
Jumping (장애물)	개인/팀 경기에서 남녀 구분없이 진행되는 종목으로 유럽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승마종목
Eventing (종합마술)	마장마술, 크로스컨트리, 장애물경기를 합친 종목
Dressage (마장마술)	1978년 처음시작된 종목으로써 고도의 훈련이 필요한 승마스포츠의 “예술”이라 인정받는 종목
Reining (제어)	2000년 FEI의 7번째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walk-in/stop/spin/rollback/circle/hesitate/lead change/run-down/run-around 등의 필수동작으로 말의 다양한 운동능력을 테스트 하는 경기
Driving (마차경기)	가장 오래된 승마스포츠로서 2명 또는 4명으로 구성된 Driver가 마차를 조종하는 종목. 종합마술과 동일하게 마장마술, 크로스컨트리, 장애물경기로 구성됨.
Vaulting (마상체조)	말 위에서 체조를 하는 경기로서, 말은 일정한 속도로 원형마장을 구보로 돌고, 기승자는 말의 리듬과 속도에 맞추어 말 위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을 연출하는 경기
ParaEquestrian (장애인승마)	1996년 이후 Paralympic Games에 공식경기화됨

10. 기대효과

지구력 승마는 FEI 공식 8개 승마 종목 중 하나로써 2008년 현재 연간 582개의 대회가 전 세계에서 개최되고 있다. 타 대회는 경기당 평균 50-60두의 마필이 출장하지만 지구력경기는 150-160두가 출전하고 있어 타 승마스포츠 대비 산업유발효과가 매우 크다.